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8. ~ 2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본문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86”을 “48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0”을 “48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63”을 “466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874”를 “87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26”을 “52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21”을 “52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<u>정원</u> 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	제26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<u>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. -----</u>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중소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<u>정원</u> 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2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<u>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. -----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6</u>	<u>489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80</u>	<u>483</u>	+3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63</u>	<u>466</u>	+3
•	•	•	

[별표 3]

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74</u>	<u>87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26</u>	<u>527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21</u>	<u>522</u>	+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9